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1325
- 발 의 자 : 김춘곤 의원(찬성의원 36명)
- 제 안 일 : 2023년 10월 13일
- 회 부 일 : 2023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2023년 6월 5일 '국가보훈처'가 '국가보훈부'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'국가보훈처장'을 '국가보훈부장관'으로 개정함.(안 제36조제1항제7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입법예고(2023. 10. 26. ~ 10. 30.) : 의견 없음.
- 다. 비용추계 : 비대상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현행 법령명으로 일치시키고(띄어쓰기), 최근 정부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며,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체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세부내용 검토

- 1) 본 조례 인용 법규 명칭의 현행화(안 제24조, 제26조제5항제14호, 제30조 제1항제1호가목, 제46조)
 - 안 제24조 등은 본 조례 4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현행 법령명으로 일치시키려는 것으로,
 -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, 인용 법규의 제명 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는바, 소관 조례의 완결성 유지를 위한 재무국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< 인용 법규 제명 개정 경과 >

본 개정안 조항	현 조례 인용 법규명칭	개정안	제명 개정 시기
안 제24조	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	「외국인투자■촉진법」	2009.1.30. 일부개정 2009.7.31. 시행
안 제26조제5항제14호	「협동조합기본법」	「협동조합■기본법」	2012.1.26. 제정 2012.12.1. 시행
안 제30조제1항 제1호가목	「조세특례■제한법」	「조세특례제한법」	1998.12.28. 전부개정, 시행
안 제46조	「서울특별시■건축조례」	「서울특별시■건축■조례」	2015.10.8. 일부개정, 시행

< 본 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	행	개	정	안
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	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	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-----		
개선 시설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등”	이라 한다)라 함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	----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		
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같은 법 시행령	제2조제1항제6호	제2조제1항제6호 -----		
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.		-----		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생 략)	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생 략)	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
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	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	⑤ -----		
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	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	-----		
으로 한다.	으로 한다.	-----	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		
14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	14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	14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-----		
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	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	-----		
경우	경우	-----		
⑥·⑦ (생 략)	⑥·⑦ (생 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		
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	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	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-----		
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	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	-----		
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	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	-----		
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	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	-----		
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	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1. -----		
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.	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.	-----		
가. 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	가. 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	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		
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	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	1항-----		
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	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	-----		
나. ~ 사. (생 략)	나. ~ 사. (생 략)	나. ~ 사. (현행과 같음)		
2.·3. (생 략)	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

제46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청사를 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46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-----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-----.
---	---

2) 정부 직제 개편 사항 반영(안 제36조제1항제7호)

- 안 제36조는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주택 및 부속토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(10년 이내 기간)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,
 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*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‘국가보훈처장’을 ‘국가보훈부장관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* 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., 일부개정, 2023.6.5. 시행

< 본 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	행	개	정	안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영	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	-----	-----
1. ~ 6. (생략)		1. ~ 6.	(현행과 같음)	
7.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		7.	-----	----- <u>국가보훈부장관</u> -----
8. (생략)		8.	(현행과 같음)	
②·③ (생략)		②·③	(현행과 같음)	

3) 자치법규 입안 체제 반영(안 제39조의2)

- 안 제39조의2는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부여하고, 현행 제1항부터 제7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8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,
 - 자치법규를 입안할 경우, 본칙은 조(條)로 구분하고,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문을 “항”이나 “호”로 구분하도록 한 자치법규 입안 체제*를 감안할 때,
- *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법제처) 참조(345쪽)
- 본 개정안 제39조의2의 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는 ‘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’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, 이를 별도의 조(條)를 부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 - 한편,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에서는,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*하고 있음.

* [회신]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검토 회신(재산관리과-12377(2023.10.30.))

< 본 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」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」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.	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이 되도록 한다

1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
2.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
3.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

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

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 및 서기는 재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.

⑥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다. 부칙

-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 시기를 ‘공포한 날로부터’로 규정하고 있는바,
 - 본 조례안은 인용 법규 명칭의 띄어쓰기를 현행화하고, 정부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며, 자치법규의 입안 체제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
 -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용례나,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성립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¹⁾.

본 일부개정조례안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석전문위원	김 태 한	입법조사관	최 석 훈
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1) 「행정기본법」 제14조(법 적용의 기준)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.
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. 다만,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.